

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1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수도법」의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정 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해당 조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수돗물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3조제3항, 제6조제2항)
- 나.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명, 제1조~제10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수도법」, 「수도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”를 “구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구미시 수돗물평가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회”를 “구미시 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수질관리”를 “수질 관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”를 “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중”을 “위원 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명한다”를 “임명하되,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상수도수질에 대한”을 “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”으로, “자”를 “사람 및 일반 수요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시민생활”을 “시민 생활”로, “일반시민(여성단체 대표포함)”을 “일반 수요자(여성 단체 대표 포함)”로 하

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상수도업무”를 “수도 관련 업무”로, “시의회의원”을 “구미시의회 의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지명된”을 “임명된”으로, “전임자의 잔임기간”을 “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통할하며”를 “총괄하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좌하며,위원장”을 “보좌하며, 위원장”으로, “수행 할”을 “수행할”로, “대행한다”를 “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“임기중”을 각각 “임기중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(6개월이상)등”을 “(6개월 이상)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아니하거나,심의업무”를 “아니하거나, 심의 업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임기만료”를 “임기 만료”로, “지명”을 “임명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분기별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,시장의 요청이 있거나,위원장”을 “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,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, 위원장”으로, “1이상이 회의소집”을 “1 이상이 회의 소집”으로,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개의회고,출석위원”을 “개의회고, 출석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가지며,가부동수”를 “가지며, 가부동수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의견의청취)”를 “(의견의 청취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관계공무원”을 “관계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안건작성,회의록작성”을 “안건 작성, 회의록 작성”으로,
“간사1인”을 “간사 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상하수도사업소”
를 “상하수도사업본부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수당등)”을 “(수당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회
의참석 또는 수질검사,시료채취”를 “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, 시료채
취”로, “범위안”을 “범위 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안”을
“범위 안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등”을 “회의 개최결과 상
수도 수질 향상 방안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</u> <u>조례</u></p>	<p><u>구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</u> <u>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도법」 제30조에 따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<u>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를 설치하고,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<u>위원회의</u> 기능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수도사업자에 대한 <u>수질관리</u>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3. (생 략) 4. 기타 <u>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</u> 요청하는 사항 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구미시 수돗물평가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기능) <u>구미시 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수질 관리</u>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그 밖에 <u>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이 ----- <p>제3조(구성) ① -----</p>

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.

1.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2.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(여성단체 대표포함)

3.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

제4조(임기 및 직무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

1명 ----- 1명-----

--.

② ----- 위원 중
-----.

③ -----

----- 임명하되,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

1.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----
----- 사람 및 일반 수요자

2. 시민 생활-----
----- 일반 수요자(여성 단체 대표 포함)

3. 수도 관련 업무-----
---- 구미시의회 의원

제4조(임기 및 직무) ① -----

-----.
----- 임명된 -----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-----.

② -----

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
2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(6개월 이상)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3.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,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
4. (생략)
5.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

총괄하며 -----.

③ ----- 보좌하며, 위원장-----
----- 수행할 -----
-----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
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
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
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
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① -----

임기 중-----
-----.

1. ----- 임기 중 -----

2. -----
-----(6
개월 이상) 등-----

3. -----
----- 아니하거나, 심의 업무-----

4. (현행과 같음)
5. 그 밖에 -----

훼손하였을 때

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 및 의사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,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 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,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

② ----- 임기 만료 -----

----- 임명-----.

제6조(회의 및 의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,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, 위원장-----

-- 1 이상이 회의 소집-----
---- 지체 없이-----
-----.

③ -----
----- 개 의 하고, 출석위원 --
-----.

④ ----- 가지며,
가부동수-----
-----.

제7조(의견의 청취) -----

----- 관계 공무원 -

-----.

제8조(간사) ① ----- 안건 작
성, 회의록 작성 -----

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정수
과장으로 한다.

제9조(수당등) ① 위원회의 회의참
석 또는 수질검사, 시료채취에
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
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
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
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
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
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
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
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
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
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
수 있다.

제10조(통보) 위원장은 회의개최
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등 중
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
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
다.

----- 간사 1명-----.

② ---- 상하수도사업본부 ---
-----.

제9조(수당 등) ① ----- 회의 참
석 또는 수질검사, 시료채취--

----- 범위 안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 범위 안

-----.

제10조(통보) ----- 회의 개최
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 방안 등

-----.

관계법령

□ 「수도법」

제30조(수돗물평가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시·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)·상수도조합에 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
2.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
3.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

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수도법 시행령」

제49조의3(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)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

른 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 “수돗물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,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

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,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수도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.

소 관 부 서		정 수 과
입 안 자	과 장	석 기 식
	팀 장	박 병 화
	담 당 자	전 혜 진 (480-4483)